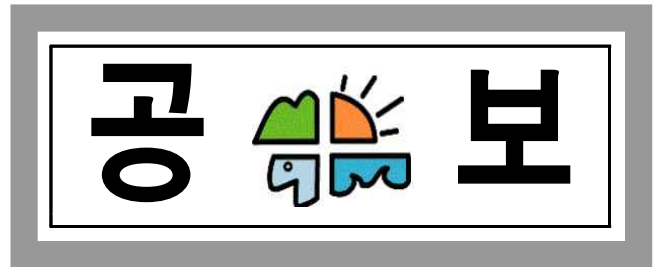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511호 2024년 1월 12일(금)

규 칙

-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3
- 2024년도 속초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4
- 공고 7

입법예고

-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61호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속 초 시 장

1. 2024년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1,009,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1,105,000원/m³
 - 다.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구경별부담금 : 106,000원(D15) ~ 9,439,000원(D100)
- ※ 세부 산출기준 붙임참조

2. 과년도(2023년) 생산자물가상승률 : 5.1%

2024년도 속초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9일

속 초 시 장

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기 준
계	주민등록	조례 외국인				
71,617	71,513	104	89	71,528	5,503 이상	총수의 1/13 이상

2.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70,867	10,631 이상	3개 이상	영랑동	4,112	617
			동명동	4,067	611
			금호동	5,187	709
			교 동	8,070	709
			노학동	18,038	709
			조양동	24,279	709
			청호동	4,301	646
			대포동	2,813	422

나. 시의원(지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20/100 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동 명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가선거구	28,550	5,710 이상	2개 이상	영랑동	4,112	286
				동명동	4,067	286
				금호동	5,187	286
				교 동	8,070	286
				청호동	4,301	286
				대포동	2,813	286
나선거구	42,317	8,464 이상	1개 이상	노학동	18,038	424
				조양동	24,279	424

3.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기 준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71,602	71,513	89	89	71,513	1,431 이상	총수의 1/50이상

4. 기타사항

위 공표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속 초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특별회계 폐쇄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폐기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1.8×1.8cm	2024. 1. 12. (2003. 1. 1.)	
폐기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1.8cm	2024. 1. 12. (2003. 1. 1.)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규칙 미정비에 따른 실제 당직편성 운영과 상이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나. 각종 재난·비상상황 발생시 부서장 중심 비상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연휴기간 부서장 숙직 후 부재를 방지하여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부서장 중심 부서별 현장 비상대응 책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을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으로 개정(안 제6조)

나.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숙직 당직사령 직급을 현재 담당관·과장급에서 팀장급으로 개정하고 숙직 당직보좌관 편성을 삭제(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우)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639-2132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033-63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추석 명절 일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과장급)”을 “(담당관·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담당주사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휴 외의”를 “그 외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담당주사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명”을 “숙직 1명, 일직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 -----.
1. <u>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u>	1. <u>설·추석 명절 일직</u>
가. 당직사령(<u>담당관, 과장급</u>): 1명	가. -----(<u>담당관 · 과장급</u>) --
나. 당직보좌관(<u>담당주사급</u>): 1명	나. -----(<u>팀장급</u>)-----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u>연휴 외의 경우</u>	2. <u>그 외의 ----</u>
가. 당직사령(<u>담당주사급</u>): 1명	가. -----(<u>팀장급</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당직원: <u>2명</u>	다. ----- <u>숙직 1명, 일직 2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